

2024학년도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(안)

I 추진 배경

-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일부개정*으로 인해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됨에 따라, 신입생 및 재학생 등 대상자별 구체적 이수 요건 및 횟수,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함

*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일부개정: 대통령령 제31434호, 공포 및 시행 '21.2.9.

II 관련 법령

「교원자격검정령」

[별표 1]

5. 성인지(性認知) 교육 이수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. 다만,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

부칙 제3조(2021. 2. 9.)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“4회”는 “2회”로 본다.

「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」 p.77~78

3) 성인지 교육 ※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

① 교육 이수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.

㉠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등)을 이수한 사람: 2회 이상

㉡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사범대, 일반대 교육과 등)을 이수한 사람: 4회 이상

※ '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,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'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.

④ 편입학,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

※ 예시: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,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,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.

Ⅲ 교원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

- 2021학년도 입학자(선발자)부터
 -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교직과정, 대학원과정): 2회 이상 이수
 -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사범대학 학사과정): 4회 이상 이수
 - 사범대학 편입학자의 경우 ‘편입학한 학년도-2’ 학년도의 기준을 적용
-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
 - 2021. 2. 9.자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 (규정학기 기준) (※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)
 - 2021. 2. 9.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

Ⅳ 성인지 교육 내용 및 이수방법

○ 성인지 교육 내용

| 차시 | 교육 내용 | 강사 |
|-------|--|---|
| 1 ~ 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대학과 인권 □ 인권교육 □ 성평등 □ 폭력예방통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- 가정폭력 예방교육 - 성매매 예방교육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권센터</p> <p>(인권·성평등교육을 1, 2차시로 인정함)</p> |
| 3 ~ 4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학교 현장에서 성인지 교육의 실제 □ 성인지 관점을 고려한 수업디자인과 생활지도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온라인 교육 (SNUON 특강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부설학교 교사</p> |

○ 성인지 교육 이수방법 및 이수 기간

- 1) 서울대학교 인권센터(<https://helpims.snu.ac.kr/>) 인권·성평등 교육 이수 → 수료증 다운로드
 ※ 반드시 2024학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(2023학년도 이전 수료증 인정 안됨)

2) 학생서비스>교직/교육인증>교직>성인지교육신청

성인지교육신청

수강신청년도: 2018, 신청학기: 2학기, * 한 학년도에 한번만 신청 가능

신청진행상태: 신청, 신청일자: 2019-03-13

첨부파일: 업로드, *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/성평등 교육 수료증

알림
※ 한 학년도에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) 교직/교육인증>교직>성인지교육신청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

ETL SNUON > 강좌목록 > 2024-2 성인지 교육 이수 (학기별 강좌명 달라짐) > 퀴즈(10문항 완료시 이수처리 됨)

4) 이수 기간

- 1학기: 2024.04.16.(화) ~ 06.20.(목)
- 2학기: 2024.11.12.(화) ~ 12.20.(금)

V 유의사항

-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**부득이한 경우**(학적 변동 등)에 한하여 횟수 기준으로 운영함. 이 경우 공문 등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함.
- 편입학,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(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) 적용

VI 행정사항

- 성인지 교육 안내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**확인서**를 받아 학과 자체 보관
- 성인지 교육 운영 : 서울대학교 교원양성혁신센터(12-204호)
- 관련 기타 사항 문의처 : 02-880-4245

[성인지 교육 안내사항]

○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「별표1」 5. 성인지(性認知) 교육 이수 기준

「교원자격검정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1434호, 공포 및 시행 '21.2.9.)

「교원자격검정령」

[별표 1]

5. 성인지(性認知) 교육 이수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**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**. 다만, **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**

부칙(2021. 2. 9.) 제3조(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은 **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** 이 경 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“4회” 는 “2회” 로 본다.

○ 교육내용 (1회 이수)

| 차시 | 교육 내용 | 강사 |
|-------|--|--|
| 1 ~ 2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과 인권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권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성평등 <input type="checkbox"/> 폭력예방통합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(디지털 성범죄 포함) - 가정폭력 예방교육 - 성매매 예방교육 |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·성평등 교육 https://helplms.snu.ac.kr/ |
| 3 ~ 4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 현장에서 성인지 교육의 실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관점을 고려한 수업디자인과 생활지도 | 온라인 교육 (SNUON 특강) |

○ 양성과정별 이수 기준

| | | | | | |
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|
| 사범대학(학부) | 4회 | 일반대학 교직과정 | 2회 | 대학원 (양성과정) | 2회 |
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--|

※ '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,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'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.

※ 2021년 2월 9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

확 인 서

| | | | | | | | |
|----|--|----|--|----|--|----------|--|
| 소속 | | 학번 | | 이름 | | 등록 학기 | |
|----|--|----|--|----|--|----------|--|

상기 위인은 무시험검정과 관련하여 성인지 교육을 **학년도별 1회 기준으로 졸업 전 회 이상 받아야 함**을 _____에게 안내받았으며,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교원자격 취득 및 졸업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.

2024. . .

위 본인 : (서명)